의안번호	제 61 호				
의 결	2018년 월 일				
연월일	(제 회)				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

발 의 자	이숙애 의원 등 7인		
발의연월일	2018년 10월 2일		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

(이숙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

발의연월일: 2018년 10월 2일

발 의 자: 이숙애·서동학·임기중

박성원 · 이의영 · 김영주

황규철 의원

1. 제안이유

그동안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운동에만 치중된 획일적이고 비자율적인 훈련과 학교운동부 내 폭력 등으로 인하여,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 해와 비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었음.

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나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(안 제4조)
- 라.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(안 제5조)
- 마. 학생선수의 인권보호(안 제6조)
- 바.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 및 연수(안 제7조)
- 사. 도핑방지 교육(안 제8조)
- 아. 학교운동부 운영 실태조사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: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체육담당(협의완료)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18. 9. 1. ~ 2018. 9. 20.(20일간, 특이의견 없음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학교운동부"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.
 - 2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 - 3. "학생선수"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「국민 체육진흥법」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 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.
 - 4. "학교운동부지도자"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·감독 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계획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계획(이하 "운영계획"이라

-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영계획을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체육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- 1. 학교운동부 운영 기본방향 및 목표
- 2.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육성 ·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립에 관한 사항
- 4.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
- 5.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
- 6.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 · 연수에 관한 사항
- ③ 운영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.
- 제5조(학습권 보장)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보 충학습,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의 교육적 지원이 적정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인권보호)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폭력, 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7조(학교운동부지도자)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8조(도핑방지 교육) 교육감은 도핑(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10호 의 도핑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9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학교운동부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□ 학교체육 진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학교체육"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.
- 2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 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3. "학교운동부"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.
- 4. "학생선수"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.
- 5. "학교스포츠클럽"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
- 6. "학교운동부지도자"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·감독 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7. "스포츠강사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.
- 8. "학교체육진흥원"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, 정책개발,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.
- 제3조(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 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 시책의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

-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 〈개정 2013. 3. 23.〉
- 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1.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
 - 2.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
 - 3.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
 - 4.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
 - 5.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
 - 6.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
 - 7.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
 - 8.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
 - 9.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
 - 10.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(이하 "최저학력"이라 한다)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.
 -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렁으로 정한다. 〈개정

2013. 3. 23.>

-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·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렁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3. 3. 23.〉
-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0 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학교운동부지도자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(이하 "학교운동부지도자"라 한다)를 둘수 있다.
 -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 -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, 금품·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 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.
 -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 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

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, 임용, 급여, 신분,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초・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- 1. 초등학교 · 공민학교
- 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- 3.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
- 4. 특수학교
- 5. 각종학교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가 될 수 있는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연수비

3. 관련조문

제7조(학교운동부지도자) ①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2018년 강사 인건비 산정 단가 적용

나. 추계 결과

연간 연수비 추계	연도별 연수비 추계					
산출기초	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합계
1. 강사비 및 운영비	4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4,000,000
가. 강사비 300,000원×2회=	2,4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2,400,000
나. 운영비 200,000원×2회=	1,6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1,600,000

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교육국 체육보건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계
서	입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4,000,000
보통교부금	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4,000,000
세 출	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4,000,000
강사비 및 운영비	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4,000,000
재원 조달	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4,000,000
의존 재원	소 계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4,000,000
	국고보조금					
	보통교부금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4,000,000
	특별교부금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자체수입					
	지방채					
기 금						
기타(치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